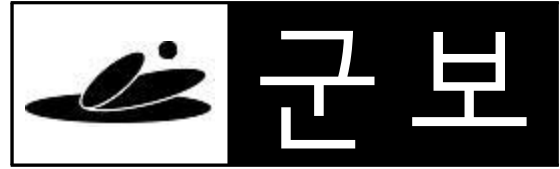


# 예 산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|   |       |
|---|-------|
| 선 | 기관의 장 |
| 람 |       |

제607호 2021. 2. 4.(목)

## 입법예고

- 예산군 공고 제2021-207호 : 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..... 1
- 예산군 공고 제2021-208호 :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... 5
- 예산군 공고 제2021-220호 : 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..... 15
- 예산군 공고 제2021-221호 :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..... 31

| 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---|--|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람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
예산군 공고 제 2021 - 207 호

## 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『행정절차법』 제41조 및『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3일  
 예 산 군 수

① **조 례 명** : 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

② **제정이유**

-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의 밤샘주차가 가능한 장소를 지정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난을 해소하고, 도로변에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의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의 교통사고를 예방함.

③ **주요내용**

- 제정 목적, 용어의 정의[안 제1조~제2조]
  -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, 그 관리 ·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  - “밤샘주차”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

## ○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[안 제3조]

-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
-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부설주차장

## ○ 이용의 중지, 지정의 취소[안 제4조~제5조]

- 축제,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해 주차장의 이용이 필요할 경우(이용중지)
- 사고, 민원 등이 3회 이상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(지정취소)

④ **입법예고기간** : 2021. 02. 3. ~ 02. 24.(22일간)⑤ **의견제출**

-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기관·단체는 2021년 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(참조: 건설교통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○ 의견서 기재사항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법인 및 기타 기관·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처 :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

- 주소 : (우)32435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

- 전화 : 041) 339-7696, FAX : 041) 339-7659

라. 제출방법 및 문의처

-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,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(전화: 041-339-7696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

## 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, 그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밤샘주차”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) ①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예산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지정한다.

1. 「주차장법」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
  2. 「주차장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부설주차장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예산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이용의 중지) 군수는 축제,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장의 이용이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다.

제5조(지정의 취소) 군수는 사고, 민원 등이 3회 이상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 : 예산군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| 조례(안) 내용 | 찬 성 여 부 |    | 의 견 | 비 고 |
|-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|-----|
|          | 찬성      | 반대 |     |     |
|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|     |

예산군 공고 제2021 - 208호

##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예산군 적극행정 운영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,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 「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02월 04일

예 산 군 수

1. 자치법규명 : 「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# 2. 개정이유

- 「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(대통령령 제30696호)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 위원회로 변경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인원 확대 등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인 「예산군 적극행정 운영조례」를 개정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위원회 명칭 변경(안 제6조)

- (기존)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→ (변경) 적극행정위원회

○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 변경(안 제7조)

- 위원 수 확대로 전문성과 공정성 제고

(기존) 9명 이상 15명 이하 → (변경) 9명 이상 45명 이하

-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(안건이 긴급한 경우 등은 서면으로 심의·의결 가능)

-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

○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

4. 입법예고기간 : 2021. 2. 4. ~ 2. 24.[20일간]

5. 의견제출 :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(기획담당관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 제출처

○ 주소 : (우)32435 충청남도 예산군 군청로 22, 기획담당관

○ 전화 : 041-339-7104, FAX : 041-339-7109

라. 제출방법 및 문의처

○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이메일([jsal255@korea.kr](mailto:jsal255@korea.kr))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

○ 기타 문의처 : 예산군청 기획담당관(☎041-339-7104)

붙임 :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| 규칙(안) 내용 | 찬 성 여 부 |    | 의 건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|----|
|          | 찬성      | 반대 | 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|    |



예산군 조례 제 호

## 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산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“장”을 “부서의 장”으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1호 중 “발굴하거”를 “찾아내거”로 한다.

제6조의 제목 “(적극행정 지원위원회)”를 “(적극행정위원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적극행정 지원위원회(이하 “지원위원회””를 “적극행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”로 하며, 같은 조 제1호 중 “제5호”를 “제6호”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“(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)”을 “(위원회 구성 및 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지원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, “15명”을 “45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원위원회의 위원장”을 “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지원위원회”를 “위원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및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지원위원회”를 각각 “위원회”로, 같은 조 제7항(중전의 제6항) 중 “누설하여서는 아니”를 “누설해서는 안”으로 한다.

-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며,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

제8조제1항 중 “지원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지원위원회의 위원”을 “위원회의 위원”으로, “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”을 “위원회의 심의·의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 단 중 “지원위원회에”를 “위원회에”로, “지원위원회는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”를 “위원회는 위원회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지원위원회”를 각각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지원위원회의 운영”을 “위원회의 운영”으로, “지원위원회의 의결”을 “위원회의 의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| 개<br>정<br>안   |
|--|---|
| 제3조(전담부서의 지정) 예산군수 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「지방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」 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는 적극행정 전담부서를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그 <u>장</u> 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. | 제3조(전담부서의 지정)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 <u>부서의 장</u> -----<br>-----.        |
| 제5조(적극행정 관련 교육) ① (생략)<br>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<br>1. 군에서 <u>발굴하거나</u> 정비한 규제개혁 사례<br>2. ~ 5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5조(적극행정 관련 교육) 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-----<br>-----<br>--.<br>1. ----- <u>찾아내거</u> -----<br>-----<br>2. ~ 5. (현행과 같음)    |
| 제6조( <u>적극행정 지원위원회</u> ) 군수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<u>적극행정 지원위원회</u> (이하 “ <u>지원위원회</u> ”라 한다)를 둔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6조( <u>적극행정위원회</u> ) 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<br>----- <u>적극행정위원회</u><br>(이하 “ <u>위원회</u> ”-----<br>-----. |

1.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 5호까지의 사항

2. (생략)

제7조(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)

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.

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.

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군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,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.

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1. ----- 제6호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위원회 구성 및 운영) ①

위원회-----  
----- 45명 -----  
-----  
-----.

②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-----  
-----.

③ 위원회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며, 위

<신 설>

⑤ 지원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, 관계 기관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.

⑥ 위원은 지원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

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  
으로 한다.

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  
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 
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  
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 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
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·  
의결할 수 있다.

1.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
2.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  
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  
유가 없는 경우
3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  
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  
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  
운 경우

⑥ 위원회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⑦ ----- 위원회 -----  
----- 누설해

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(생략)

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~ 4. (생략)

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(생략)

제11조(간사) ① 지원위원회에는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.

② (생략)

제12조(수당 등) ① 지원위원회에

서는 안 -----.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

① 위원회의 위원-----  
-----  
----- 위원회의 심의·의결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--- 위원회에

위원회는 -----  
-----  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간사) ① 위원회는 위원회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수당 등) ① 위원회-----

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한 관계  
전문가와 민간위원에게는 예산  
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  
급할 수 있다.

②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단체의  
대표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 
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  
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  
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의  
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  
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  
한다.
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위원회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3조(운영세칙) -----  
----- 위원회의 운영-  
----- 위원회의  
의결-----  
-----.

예산군 공고 제2021-220호

## 예산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

「예산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 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2월 4일

예 산 군 수

### 1. 자치법규명

- 예산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

### 2. 제정이유

-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, 신체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인복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
-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증진 도모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

### 3. 주요내용

- 조례의 제적 목적 및 고령친화, 고령친화도시,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등 영요의 정의를 규정 (안 제1조 및 제2조)
-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 (안 제4조)
-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실시, 고령사회 가이드라인 수립 점검 등을 규정 (안 제6조, 제7조, 제8조)
- 노인의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, 노인복지시설 확충, 사회·문화활동 참여,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 증진 도모 사항을 규정 (안 제10조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)
-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사업추진에 대한 규정 (안 제16조)
-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링을 위한 모니터단 설치, 구성, 기능에 대한 사항 규정 (안 제23조, 제24조, 제25조)
- 고령친화도시 조성 심의, 자문을 위한 위원회 설치, 기능,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 (안 제27조, 제28조, 제29조)

### 4. 입법예고기간 : 2021. 2. 4. ~ 2. 24.(20일간)

### 5. 의견제출

-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(참조 : 예산군 주민복지과, 주소 :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(4층), 우편번호 : 32435)에게 서면이나 메일(mms8034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  
【☎(041)339-7432】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조례안 1부
- 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.

예산군 조례 제 호

## 예산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### 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고령친화”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고령친화도시”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·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.
3. “고령사회 가이드라인”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.
4. “고령친화도”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.

제3조(기본이념) 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.

② 예산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)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, 노인은 사회경제적·신체

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.

제4조(책무) ① 예산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책무를 진다.

② 예산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군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)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.

## 제2장 고령친화도시 조성

제6조(계획 수립 등) ① 군수는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2.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
3. 주요 정책과제
4. 연도별 추진계획
5. 추진사업 목록
6.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시행계획의 실시 등) 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군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.

제8조(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) ① 군수는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,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제9조(조사 및 연구) 군수는 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생활환경 편의증진) 군수는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
2.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
3.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
4.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
5.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

제11조(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) 군수는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
2.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

3.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
4.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
5.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
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2조(사회활동 참여의 장려) 군수는 노인이 사회·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
2. 노인 참여 문화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
3.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
4. 그 밖에 노인의 사회·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

제13조(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) 군수는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,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
2.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
3. 노인에 대한 존경,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
4.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

제14조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5조(고용촉진 및 직업안정) 군수는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
2.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

3.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·운영

4.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

제16조(건강증진) ① 군수는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노인 건강진단 사업

2.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

3.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

4. 노인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

5. 보건교육과 건강상담

6. 자살, 우울증,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

7. 건강운동 연구 등 질병예방 및 치료체계 구축

8.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

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성별, 연령, 장애여부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.

제17조(고령친화정책 담당부서 설치)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8조(국제교류의 활성화)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,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·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19조(교육 및 홍보)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교육·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0조(전문인력의 양성) 군수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, 이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 시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.

제21조(추진실적의 평가)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22조(포상)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「예산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# 제3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

제23조(설치)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예산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(이하 “모니터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제24조(구성) ① 모니터단은 30명 이내의 군민으로 구성한다.

② 군수는 도시계획, 교통, 의료,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 요원(모니터단에서 고령친화 정도를 조사 측정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)을 위촉할 수 있다.

제25조(기능)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·점검하고, 일상 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.



제26조(실비변상) 군수는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## 제4장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

제27조(설치)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심의·자문기구로서 예산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28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자문한다.

1.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·시행
2.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,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
3.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29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
③ 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군의원,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, 고령친화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.

⑤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.

제30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

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제31조(위원의 위촉 해제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
2.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3.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때

제32조(위원의 제척 등)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신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.

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.

③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.

제33조(위원장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회의를 총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,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

- 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, 장소, 토의안건 등을 미리 알린다.
-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⑤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세우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제35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「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과 소속 의회 의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제36조(운영세칙)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예산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| 규칙(안) 내용 | 찬 성 여 부 |    | 의 건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|----|
|          | 찬성      | 반대 | 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|    |

## 【붙임 1】

관 계 법 령 발 취

**노인복지법**[시행 2019. 7. 16.] [법률 제16243호, 2019. 1. 15., 일부개정]

**제2조(기본이념)**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.

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.

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**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23조(노인사회참여 지원)**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 봉사기관, 노인취업 알선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**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**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##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[시행 2014. 3. 18.] [법률 제12449호, 2014. 3. 18., 일부개정]

**제20조(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)** ① 정부는 저출산·고령사회 중·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, 이에 따른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,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.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
2.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
3.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
4. 그 밖에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29조(조사 및 연구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·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.

**제31조(국제교류의 활성화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,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.

**【붙임 2】**

**「예산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」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**

**1. 비용발생 요인**

- 해당사항 없음

**2. 미첨부 근거 규정**

-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

**3. 미첨부 사유**

-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

**4. 작성자 : 주민복지과장**

예산군 공고 제2021-221호

##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제정안 입법예고

「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2월 4일

예 산 군 수

### 1. 자치법규명

-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

### 2. 제정이유

- (사)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
- 경로 당 회장(읍·면 분회장 및 노인회장)에 대한 활동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### 3. 주요내용

- 노인의 복지증진 및 노인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기여 등 목적을 규정 (안 제1조)
- 지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 등을 규정 (안 제3조)



- 지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규정 (안 제4조)
- 읍·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비 지원 규정 마련 (안 제5조)
-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 대부 및 사용 수익 규정 마련 (안 제6조)

#### 4. 입법예고기간 : 2021. 2. 4. ~ 2. 24.(20일간)

#### 5. 의견제출

-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(참조 : 예산군 주민복지과, 주소 :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(4층), 우편번호 : 32435)에게 서면이나 메일(mms8034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.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주민복지과 경로복지팀

【☎(041)339-7432】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 조례안 1부
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.

예산군 조례 제 호

##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노인 사회활동 참여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(이하 “지회”라 한다)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 바에 따른다.

제3조(비용의 보조) 예산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지원대상 사업) 군수는 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지회 또는 분회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
2. 노인교실·노인대학 및 경로당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3. 노인 취업활동과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
4.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
5.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, 교육훈련, 학술진흥, 홍보출판, 국제교류 등의 업무

6.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

7.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

8. 예산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

9.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

10.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5조(활동비 지원) 군수는 지회 분회 및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읍·면 분회장 및 경로당 회장에게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6조(공유재산의 무상대부)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지원절차 등) ① 지회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서

2.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

3.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·통보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

2.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액의 적정성

3. 유사사업 또는 중복지원의 여부

4.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

제8조(보고·검사 등) 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「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지도·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·서류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조례명 : 예산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| 규칙(안) 내용 | 찬 성 여 부 |    | 의 건 | 비고 |
|----------|---------|----|-----|----|
|          | 찬성      | 반대 |     |    |
|          |         |    |     |    |

## 【붙임 1】

관 계 법 령 발 취

## ○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16. 8. 4.] [법률 제13991호, 2016. 2. 3., 일부개정]

제3조(협조 및 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·지원할 수 있다

제4조(국유·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 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에도 불구하고 국유·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대한노인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.

제5조(비용의 보조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개인, 법인 또는 단체는 대한노인회의 시설 및 운영지원으로 금전,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.

## 【붙임 2】

## 「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안」비용추계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예산군 대한노인회 예산군지회 지원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 제5조 경로당 회장 활동비의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

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- 2020.12월 기준 경로당 회장 387명 활동비 발생(1차년도 117,660천원)  
- 분회장 활동비(13명, 월 70,000원), 경로당 회장(374명, 월 50,000원)

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| 연도     |     | 1차 년도<br>(2021년) | 2차 년도<br>(2022년) | 3차 년도<br>(2023년) | 4차 년도<br>(2024년) | 5차 년도<br>(2025년) | 합 계       |
|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구분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세입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세출     | 활동비 | 117,660          | 237,120          | 238,320          | 238,920          | 240,120          | 1,072,140 |
| □ 총 비용 |     | 117,660          | 237,120          | 238,320          | 238,920          | 240,120          | 1,072,140 |

- 마을 분구 등 경로당 증가 예상에 준하여 추계 (연 1~2개소 증가)

## 4. 재원조달방안 : 군비 1,072,140천원

## 5. 작성자 :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장